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438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이수진・이기헌・이병진

김정호 · 신정훈 · 송옥주

서영교 · 민형배 · 정태호

추미애 · 송재봉 · 민병덕

이연희 의원(13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601시간 대비 314시간 이상,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의 1,349시간 대비 56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장시간 노동이 심 장질환, 뇌질환의 위험을 현격하게 높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장시간 노동으로 의한 과로사 등의 발생 위험을 경고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장시간 노동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며,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에는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과로사 현황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제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음.

따라서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와 함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자발적으로 단축하거나 변형근로시간, 연장근로 및 교대제 근무 등의 운용을 개선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등의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장시간 노동 등 업무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자살, 질병, 장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과로사 등을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으로 정의하고, 과로사를 업무 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로성 질환의 발 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이에 따른 장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 ·자살로, 과로성 질환을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 질환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정의함 (안 제2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 및 민간과 상호협력하여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민간은 이러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3년마다 과로사 등 방지대책의 추진목표·기 본방향과 추진체계 등을 정한 과로사 등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시 행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매년 과로사 등 방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8조).
- 바. 고용노동부장관이 과로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과로사 등의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사. 과로사 등 방지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간의 과로 사 등 방지대책의 조정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과로사 등 방지대 책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 아. 과로사 등에 관한 피해자단체를 구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한 피해자단체에게 과로사 등 발생시 과로사 등 방지대책협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의견 제출권을 보장함

(안 제12조).

-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로사 등을 예방·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 등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3조).
-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과로사 등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공공기관 및 고용노동 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등을 통하여 과로사 등의 예방·방 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 등의 예방·방지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7조).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시간 노동 등 업무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자살, 질병, 장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과로사"란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사망(자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가.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 질환 또는 정신적 질환(이하 "과로성 질환"이라한다)의 발생
 - 나. 기존 질환의 자연속도 이상의 악화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신체적 장해 또는 정신적 장해의 발생 2. "과로사 등"이란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과로사 등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과로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를 통하여그 결과를 과로사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반영하며, 과로사 등 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과로사 등 방지대책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및 그 밖에 이해관계인 등의 긴밀한 협력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 필요한 대책(이하 "과로사 등 방지대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 등 방지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사업주·국민과 상호 협력하고 정보의 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국민과 사업주의 책무) 국민과 사업주는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로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가 추진하는 과로사 등 방지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로사 등의 방지와 그에 관한 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과로사 등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로사 등 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과로사 등 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과로사 등 방지대책의 추진목표ㆍ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과로사 등 방지대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3.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4. 과로사 등 위험집단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5. 과로사 등 실태조사 및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
- 6. 과로사 등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 7. 그 밖에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제11조에 따른 과로사 등 방지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

- 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과 로사 등 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은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출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과로사 등 방지대책

제9조(과로사 등 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로사 등의 발생 규모와 추세를 파악하는 등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과로사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로사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실태조사의 시기, 내용,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조사·연구 등) ① 정부는 과로사 등의 효과적인 예방·방지를 위하여 과로사 등에 관한 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고 근로조건 ·작업환경·조직구조·조직문화의 영향을 분석하여 과로사 등의 원인을 규명하는 등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야 한 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과로사 등 방지대책협의회) ① 중앙행정기관 간의 과로사 등 방지대책의 조정 및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과로사 등 방지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각 위원은 비상근 위원으로 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3. 전국적 규모의 사업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4.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5. 그 밖에 과로사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⑤ 협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로사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퇴직한사람을 포함한다), 사업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피해자단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로사 등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그 유족 등 가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1. 과로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장해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가족
 - 2. 과로성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가족

- 3. 기존 질환이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악화된 사람(이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장해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가족
- 4. 기존 질환이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악화됨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가족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는 과로사 등 발생시 협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3조(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조치·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로사 등을 예방·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 등의 예방·방지를 위하여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자발적으로 단축하거나 같은 법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에 따른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및 교대제 근무[근로자를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등의 운용을 개선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및 지원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 등의 예방·방지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상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 사 등을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과로사 등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 및 사업주 등에게 과로사 등을 예방・방지하기 위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상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관한 사항, 상담의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 등의예방·방지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 제17조(국회에 대한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3년마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평가된 추진실적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과로사 등 예방·방지 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